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611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5462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가단561120 판결

전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도

변론 종결 2021. 12. 1.

판결 선고 2022. 1. 12.

주문

1.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113,473,851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3,473,8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소외 B과 피고 사이에 202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473,8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 25. B(사업체명 'C')과 사이에 보증금액 120,000,000원, 보증기한 2019. 1.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B은 2018. 1. 30.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B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20. 3. 30. 후의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2020개회131678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위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2021. 6. 16. 법원에 의하여 기각결정 되었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6조 1항 5호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에는 원고는 B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B은 원고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1. D은행에게 B의 위 대출금 105,382,914원(원금 104,000,000원 + 이자 1,382,9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그 중 642,52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04,740,394원, 회수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140원이었고, 채권보전비용 지출금은 468,870원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액은 105,209,404원

[104,740,394원(대위변제금) + 140원(확정손해금) + 468,870원(채권보전비용금)] 및 그 중 104,740,394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이다.

마. 그런데 B은 2020. 4. 20. 자기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함),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20.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그후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4. 근저당권자를 E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2020. 4. 27. 설정계약 원인, 채권최고액 276,000,000원, 채무자 피고)를 경료하였고, 기존에 2018. 3. 8.자로 등기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D은행, 채권최고액 310,800,000원, 채무자 B)에 관하여는 2020. 5. 6. 말소등기(같은 날 해지 원인)를 경료하였다.

사.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아래 표와 같이 2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가액의 합계는 462,982,000원이었다.

1	이 사건 부동산	460,000,000
2	평택시 F 임야 285m ² 중 3/285 지분	345,000
3	평택 G 임야 779m ² 중 30/779 지분	2,637,000
합계	462,982,000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담보설정시 감정가액인 460,000,000원으로 인정함(을 6호증).		
② 위 2번 임야는 m ² 당 개별공시지가가 115,000원이므로 285m ² x115,000원x3/285=345,000원.		
③ 위 3번 임야는 m ² 당 개별공시지가가 87,900원이므로 779m ² x87,900원x 30/779=2,637,000원.		

아. 한편 이 사건 증여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534,564,023원이었다.

1 H은행	10,433,000
2 E	70,000,000
3 E	30,000,000

1 H은행	10,433,000
4 I	10,683,000
5 J카드	15,801,000
6 K카드	14,890,000
7 J카드	800,000
8 L카드	3,000,000
9 D은행	248,957,023
10 D은행	130,000,000
합계	534,564,023

자. 이에 따라 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534,564,023원)가 적극재산(462,982,000원)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로 인하여 남은 적극재산은 위 F 임야 및 G 임야 밖에 없으며 그 가액이 2,982,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한 채무초과상태가 유발되었다.

차.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말소했던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D은행, 채권최고액 310,800,000원, 채무자 B)의 이 사건 증여 당시 피담보채무액은 248,957,023원이었다.

[증거 : 갑 1 내지 12호증,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M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D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성

1)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B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20. 7. 1. B의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미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약 20일전에 자신의 적극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B의 채무는 534,564,023원이나 적극재산은 2,982,000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인 B은 자신의 채무와 적극재산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점은 추정되므로 피고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와 소유권이전등기는 B와 피고가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 및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형성과정, 쌍방의 기여도, 이혼에 이르는 수년동안 B이 전혀 재정적 기여를 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피고의 수입으로 부부의 지출을 해결한 점 등에 비추어 B이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전적으로 정당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1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 20. B을 상대로 이혼소송(수원가정법원

2020드단510819)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법원에 의하여 2020. 11. 25. 쌍방이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그것이 2020. 12. 18. 그대로 확정되어 쌍방이 이혼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가 B와 피고가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B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실행된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사건 증여를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혼시 분할할 재산은 B의 경우 위와 같이 적극재산 462,982,000원, 소극재산 534,564,023원(이 소극재산은 B가 이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1))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의 경우 적극재산으로 성남시 분당구 N 임야 7148㎡ 중 18480000분의 9400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가액이 21,450,000원(2018. 5. 18. 소유권취득 당시 매수가액)인 점, 따라서 부부 합산 재산은 -50,132,023원(462,982,000원 - 534,564,023원 + 21,450,000원)으로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가 재산분할로서 B로부터 이전받을 적극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그 점에서도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취소·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한 후 종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D은행, 채권최고액 310,800,000원)을 말소하였고, 사해행위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48,957,023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가액이 730,000,000원인 점은 쌍방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면 그 잔존가치는 481,042,977원(730,000,000원 - 248,957,023원)이다.

3)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원고의 채권액은 앞서 보았듯이 105,209,404원 및 그중 104,740,394원에 대한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6. 25.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13,473,851원(105,209,404원 + 지연손해금 8,264,447원2)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액 113,473,851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가액에서 위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481,042,977원 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채권액 113,473,851원의 범위에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그 금액의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20. 체결된 증여계약은 113,473,851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13,473,85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판사곽동우

별지

1)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이 적정한 시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대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2) $104,740,394\text{원} \times 8\% \times 360/365 = 8,264,447\text{원}$